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27

부 산 고 등 법 원

창원제1행정부

판 결

사 건	(창원)2019누114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피항소인	주식회사 A
	소송대리인 변호사[redacted]
피고, 항소인	[redacted]시장
	소송대리인 변호사[redacted]
제1심판결	[redacted]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9구단10550 판결
변론종결	2019. 12. 11.
판결선고	2020. 1. 15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8. 7. 11.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9,603,520원, 지방교육세 10,436,350원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27

농어촌특별세 5,218,170원(각 가산세 포함)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[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, 피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(을 제10, 11, 12호증)을 살펴보더라도, '원고의 성립은 C이 영위하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,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', '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,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'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].

2. 결 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27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